72. 포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렴

.....

성별 남 나이 59세 직종 화학제품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 1. 개요: 박OO은 2000년 10월 26일 용역업체인 S개발(주)에 입사한 후 L실리카 코리아에 파견되어 이산화규소(무정형 침강 실리카) 등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약 1년간 근무하던 중 2001년 10월 당뇨, 신농양, 족부 봉소염, 폐렴 등이 발병하여 퇴사하였다.
- 2. 작업환경: 사업장은 고상 규산염 나트륨 및 이산화규소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작업공정은 99.8 % 규사와 99.7 % 소다회를 혼합하여 1,700 ℃ 용해로에서 용융하면 액상의 규산염 나트륨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냉각하여 고상의 규산염 나트륨(물유리)을 생산함으로써 종료되는 공정과 액상의 규산화나트륨을 가공하는 2가지 공정이 있다. 액상의 규산염나트륨에 황산을 반응시켜 가열하여 여과, 건조시키면 파우더 형태의 이산화규소(무정형실리카, 화이트카본)가 생산되고 포장하여 상품으로 출하한다. 박OO은 이산화규소를 포장하는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작업 중 기계에서 포대로 이산화규소가 담겨지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고, 또 포대 입구를 밀봉하기 위하여 포대 입구의 분진을 털어 내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
- 3.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이전에는 건강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조회된 건강보험 수진기록 등을 보면 당뇨병으로 내과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다. 일반건강진단에서는 간기능이 매우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 발생후 대학병원에서 당뇨, 신농양, 폐렴, 족부 봉소염으로 진단받았다. 근로자의 폐렴은 신우신염(신농양 포함)이 폐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폐렴이고, 신우신염, 족부 봉소염 등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도 당뇨병으로 인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악화된 것으로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 폐에 분진에 의한 간질성질환 등의 소견은 없었다.

4. 결론: 근로자 박OO의

- ① 당뇨를 제외한 폐렴과 신농양은 L실리카 코리아 입사 후 발생한 것이 인정되나,
- ②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1년 동안 호흡기계 증상이 없었고, 금회 발병 후 촬영한 흥부 방사선사진에서도 분진에 의한 폐질환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작업 중 노출된 분진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③ 반면에 근로자가 오랜 동안 치료하지 않은 당뇨병, 만성음주, 만성간염 등의 면역억제 소견이 있었던 것이 의무기록이나 건강보험 이용 조회, 의학적 지식을 이용한 추정을 통해 인정되고,
- ④ 현재까지 당뇨병과 같이 면역이 억제된 사람에서 발생하는 폐렴, 신농양 등의 기전이나 근로자의 임상의학적 검사소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박OO의 폐렴, 신농양 등은 근로자의 당뇨병등 기존질병으로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정상 균주가 기회감염을 일으켜 진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한 추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박OO의 폐렴, 당뇨, 신농양 등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